

사회복지법인

# 천주교성가복지회 이사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7년 12월 19일(화) 17시
2. 회의장소 : 전주교구청5층 사목상황실
3. 이 사 : 대표이사 이병호  
 이 사 김남기, 성태수, 정유진, 김창신, 김봉술, 이남숙  
 감 사 오성기, 최준철
4. 참 석 자 : 대표이사 이병호  
 이 사 성태수, 김남기, 김봉술, 이남숙
5. 회의안건

1) 성가정의 집 2017년 추가경정예산(안)	원안가결
2) 성가정의 집 2018년 예산(안)	원안가결
3) 천주교성가복지회 2018년 예산(안)	원안가결
4) 임원변경의 건	원안가결
5) 정관변경의 건(기본재산변경포함)	원안가결

## [ 개 회 ]

대표이사 이병호 주교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참석하였으므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성가복지회 이사회의 시작을 선언하다. 참석이사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고, 회의를 시작하다.

### 1) 제1호 의안 : 성가정의 집 2017년 추가경정예산(안)

시설	2017년 2차추경예산(A)	2017년 1차추경예산(B)	증가 (A)-(B)	주요 증감 요인
성가정의 집	359,900,647	344,261,466	15,639,181	세입)운영비 기능보강사업(외벽방수공사) 가, 후원금 및 전입금 증가 세출)재산조성비, 사업비 증가 등

대표이사 이병호 : 먼저, 성가정의 집 2017년 추경예산입니다. 외벽방수공사 및 외부공모사업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였고, 동시에 재산조성비 등 사업비가 증가한 요인입니다.

이사 김봉술 : 성가정의 집 추경예산에 동의합니다.

이사 김남기 : 재청합니다.



대표이사 이병호 : 김봉술 이사의 동의과 김남기 이사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전체이사 : 모두 동의

대표이사 이병호 : 전체 이사의 동의로 성가정의 집 2017년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.

## 2) 제2호 의안 : 성가정의 집 2018년 예산(안)

시설	2018년 예산(A)	2017년 2차추경예산(B)	증가 (A)-(B)	주요 증감 요인
성가정의 집	341,970,297	359,900,647	△17,930,350	세입)운영비증가, 후원금감소 세출)사업비증가, 복지지원금증가 및 퇴소지 지원등으로 증가

대표이사 이병호 : 두 번째 의안은 성가정의집 2018년 예산(안)입니다. 작년보다 다소 감소했습니다만, 일시적인 후원금의 증가에 따른 차이로 보시면 되고,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검토해 주십시오.

이사 성태수 : 원안대로 2018년 예산에 동의합니다.

이사 김봉술 : 재청합니다.

대표이사 이병호 : 성태수 이사의 동의와 김봉술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. 그럼, 성가정의 집 2018년 예산(안)에 대하여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전체이사 : 모두 동의

대표이사 이병호 : 성가정의 집 2018년 예산(안)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.

3) 제3호 의안 : 천주교성가복지회 2018년 예산(안)

시설	2018년 예산(A)	2017년 예산(B)	증가 (A)-(B)	비고
천주교성가복지회	52,550,000	52,550,000	0	세입.세출 동결

대표이사 이병호 : 천주교성가복지회의 2018년 예산(안)에 대한 안건입니다. 2018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. 의견을 나누어 주십시오.

이사 성태수 : 천주교성가복지회의 큰 사업은 불우이웃돕기로 성미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2018년 예산(안)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.

이사 이남숙 : 재청합니다.

대표이사 이병호 : 성태수 이사의 동의와 이남숙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.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.

전체이사 : 모두 동의

대표이사 이병호 : 천주교성가복지회 2018년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4) 제4호 의안 : 임원변경의 건

대표이사 이병호 : 천주교성가복지회 임원 중 감사(오성기, 최준철)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을 변경해야 합니다. 정관 제16조(임원의 선임)에 따라, 신임 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사 김봉술 : 감사님은 효자 4동 성당에 계시는 백승호 신부님을 추천합니다. 과거 재산관리 및 회계 등에 관여하여 일하신 경력이 있고, 본 법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한분은 공인회계사이며 오랫동안 회계 분야에 종사하신 경험이 풍부한

최종문 회계사님을 추천합니다.

이사 성태수 : 김봉술 이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.

이사 이남숙 : 재청합니다.

대표이사 이병호 : 그림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.

전체이사 : 모두 동의

대표이사 이병호 : 천주교성가복지회 감사는 백승호 신부님과 회계관련 전문가인 최종문 회계사님으로 결의하였음을 선언합니다.

#### 5) 제5호 의안 : 정관변경의 건(기본재산변경 포함)

대표이사 이병호 : 이번 안건은 천주교성가복지회 정관변경 건입니다. 김봉술 이사께서 설명해 주십시오.

이사 김봉술 : 먼저 지난 이사회 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정관 제1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와 관련하여 법인의 이사 정수를 1명 늘리는 (안)입니다. 이사회는 이사 정수가 7인일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, 만일 부득이한 일이 발생하여 이사정수가 6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관할 시군구에 요청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개최할 수 있으므로 이사 정수를 8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또한 제17조(임원선임의 제한), 제22조(겸직금지), 제27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, 제30조(수익사업의 종류)의 내용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조항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등의 변경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. 표를 참조하시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

이사 이남숙 : 임원정수 변경은 이사회 운영을 하는데 매우 좋은 의견으로 동의하며, 기타 다른 사항에도 관리 규정에 따라 변경(안)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동의합니다.

이사 성태수 : 이남숙 이사의 의견에 재청합니다.

대표이사 이병호 :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요. (잠시 침묵 후) 없습니다.  
그럼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.

변 경 전	변 경 후	변경 사유
<p>제1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</p> <p>1. 대표이사 1인 2. 상임이사 1인 <u>3. 이 사 5인</u> 4. 감 사 2인</p>	<p>제1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</p> <p>1. 대표이사 1인 2. 상임이사 1인 <u>3. 이 사 6인</u> 4. 감 사 2인</p>	<p>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이어야 함. 그러나 이사 정수가 7명인 경우 이사 1명의 결원이 발생한다면 이사선임에 있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8인으로 변경이 필요함.</p>
<p>제17조(임원선임의 제한) 이 법인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제17조(임원선임의 제한)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”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”가 아니어야 한다.</p>	<p>규정 변경</p>
<p>제 22조(겸직금지) ① 이사는 이 법인이 지원하는 시설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.</p>	<p>제 22조(겸직금지)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.</p>	<p>규정 변경</p>
<p>제 27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 ② 대리인은 다른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.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 27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 <u>이사회</u>의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</p>	<p>규정 변경</p>
<p>제 30조(수익사업의 종류)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 30조(수익사업의 종류)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</p>	<p>사회복지사업법 조항 변경</p>

전체이사 : 모두 동의

대표이사 이병호 : 정관 변경 건은 오늘 참석한 이사 전원이 동의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. 이어서 기본재산 변경건입니다.



이사 김봉술 : 기본재산은 토지의 공시지가 및 건물 과표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하며,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

【 기본재산 변경내역 】

변경전 기본재산	변경후 기본재산	증 감
827,800천원	1,235,453천원	407,653천원 증가

【 기본재산목록 변경현황 】

1) 현금 : 변동사항 없음

재 산 명	수 량	평 가 액(원)	비 고
현 금 (정기예금)	2계좌	500,000,000	변동없음
합 계	2계좌	500,000,000	

2) 토지

NO.	소재지	지번	지목	변 경 전		변 경 후		비고
				면적(m <sup>2</sup> )	평가액 (개별공시지가)	면적(m <sup>2</sup> )	평가액 (개별공시지가)	
1	전북 군산시 조촌동	775-14	대	436.8	146,320,000 (335,000)	436.8	245,306,880 (561,600)	

3) 건물

N O.	소재지	건물내역	변 경 전		변 경 후	
			면적(m <sup>2</sup> )	평가액 (공시지가)	면적(m <sup>2</sup> )	평가액 (공시지가)
1	전북 군산시 조촌동 775-14	경량철골조 카라사이트 단층소매점 144m <sup>2</sup>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스테이지방 단층 변소 12m <sup>2</sup>	145.2	19,140,000	145.2	14,421,120
2	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034-1 동국해성아파트 101동 1505호	철근콘크리트조 134.89m <sup>2</sup>	134.89	70,000,000	134.89	136,000,000
3	군산시 조촌동 683-17	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 위 우레탄패널 지붕 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층 사회복지시설 345.14m <sup>2</sup> 2층 사회복지시설 249.54m <sup>2</sup>	594.68	92,340,000	642.36	339,725,903
합계			874.77	181,480,000	922.45	490,147,023

이사 성태수 :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.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평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.

이사 김남기 : 재청합니다.

대표이사 이병호 :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? (잠시 침묵)  
그럼,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.

전체이사 : 모두동의

대표이사 이병호 : 기본재산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안건이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. 감사합니다.

## 6. 폐회

대표이사 이병호 : 오늘 논의사항 이외 다른 기타 토의사항이 있으신지요? 없으면 폐회 동의 바랍니다.

성태수 이사 : 오늘 이사회 폐회를 동의합니다.

김봉술 이사 : 성태수 이사님의 폐회 동의에 재청합니다.


(이사 전체 동의)


대표이사 이병호 : 오늘 법인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, 의안이 모두 심의 종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. 고맙습니다.


( 폐회를 선언하고, 기도로 마칩니다. )


마침시간 : 17시 47분


위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석 임원이 서명·날인함.

대표이사 이병호 

이 사 성태수 

이 사 김남기 

이 사 김봉술 

이 사 이남숙 

2017년 12월 19일



사회복지  
법인

# 천주교성가복지회